



알아봅시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홍보부-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허용돼 각국의 농산물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1. 최소 시장접근(MMA) 법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

쌀은 최소 시장접근방식으로 새해 한해동안 국내소비량의 1%인 35만석이 도입되며 돼지고기는 2만1천9백30톤, 쇠고기의 경우 12만 3천톤, 닭고기의 경우 7천7백톤이 수입될 예정이다.

돼지고기 경우 수입방식은 수입창구로 지정된 기관이 일반수입업자들에게 수입권을 판매하는 제도로 부과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업자를 우선적으로 택하는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도입하게 되며 그 수입창구는 축협중앙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일부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피해구제제도(SSG)가 운영된다. 수입물량이 5% 이상

시 또는 수입가격이 '88~'90년도의 평균 수입가격보다 10% 이상 하락될 경우에 TE의 1/3 범위 안에서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2.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행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올 2월중에 본격 시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하게 됨에 따라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수가 94개~1백54개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개인업체들은 법인체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영세율 적용 실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반면, 일선 양축농가들은 축산시설개선 계획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본격 시행된 후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시설개선을 연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 돼지고기 등 8개 농수산물 수출 보험 적용

돼지고기, 사과, 화훼, 콜 등 8개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해 올 4월부터 수출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수출업자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일정비용을 지출하고도 수출 증진 효과가 당초 계획만큼 나타나지 않아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 대비한 시장개척보험도 신설했다.

공사는 우선 돼지고기, 사과, 화훼, 밤, 배, 버섯, 콜, 김 등 8개 품목에 대해 수출보험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4. 축사 신고면적 1백20평으로 확대

올해부터 건설부는 양축농민의 축사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 신고에 의한 축사 건축면적을 현행 60평에서 1백20평으로 확대로 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심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된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는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60평) 미만에서 400제곱미터(1백 20평) 미만으로 확대했다.

반면에 도시계획 구역안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축의 신고대상면적을 200m²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

5. 축산물 등급화 거래 규정 및 도체의 등급기준 조정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월 「축산물 등급화 거래

규정과 도체의 등급판정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규정」을 고시하고 구립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축산물 등급화 거래규정에 따르면 축산물의 등급화 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표 1>과 같다.

<표 1> 고시된 거래지역 및 축산물의 종류·형태

고시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제주도	소, 돼지의 도체	'95. 2. 6
부산직할시	돼지의 도체	'95. 2. 6
	소의 도체	'95. 6. 1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직할시	돼지의 도체	'95. 6. 1
	소의 도체	'95.10.1

한편 축산물의 등급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한 기준과 적용조건을 정한 「도체의 등급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규정」에 의하면 돼지도체의 경우 등급기준은 박피인력측정시 도체 중량 A등급의 경우 상한선을 기존의 75kg에서 81kg으로, 하한선의 경우 현행 54kg에서 55kg으로 각각 6kg, 1kg 상향 조정되었다.

등지방두께의 경우 A등급의 상한선이 현행 14mm에서 16mm로, 하한선의 경우 4mm에서 6mm로 상향조정되었다.

한편, 고시된 「도체의 등급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규정」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